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400099  
신청인 : 1. 주식회사 엘지(LG Group)  
2.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대리인 : 백인경, 김정식  
피신청인 : 정호철 (Hochul Jung)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1. 주식회사 엘지(LG Group)  
2.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대리인 : 백인경, 김정식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82 현대빌딩 7층  
피신청인: 정호철 (Hochul Jung)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지산 1동 1160-29

분쟁 도메인이름은 "lgstudio.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메가존(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527-13 삼남빌딩 3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4. 8. 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4. 8. 11.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4. 8. 1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4. 8. 1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4. 8. 1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4. 9. 1.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4. 9. 1.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신청서 양식 오류 등을 이유로 센터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보정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4. 9. 5. 센터에 보정된 답변서를 요청하였다.

2014. 9. 12. 센터는 남호현 위원에게 조정인 선임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받아 2014. 9. 15.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조정부는 2014. 9. 24.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4. 10. 1.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4. 9. 29. 센터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였다. 센터는 같은 날 이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면서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2014. 10. 6.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2014. 10.6. 피신청인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 1은 “LG STUDIO” 표장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상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 한국에서의 표장 “LG STUDIO” 등록사항

- 표장: LG STUDIO
- 출원번호/출원일: 40-2010-15301 / 2010.3.23
- 등록번호/등록일: 40-870506 / 2011.6.27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i) 신청서에서의 주장

첫째, 표장 “LG”는 신청인 1 및 2가 속한 LG그룹의 상호의 약칭이자 상표·서비스표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둘째, 이 사건 도메인이름 “lgstudio.com”은 이견 등록상표 “LG STUDIO”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LG그룹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이자 상표·서비스표인 표장 “LG”와도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UDRP 4.(a)(i)).

셋째, 피신청인은 신청인 1 및 2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며, 이견 등록상표의 권리자 및 사용권자인 신청인 1 및 2는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UDRP 4.(a)(ii)).

넷째,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신청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점, 신청인의 표장 “LG”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분쟁도메인이름의 웹페이지에는 “LG Studio Series”, “Lg Appliances”, “lgstudio.com”와 같은 표장이나 링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점,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UDRP 4.(a)(iii), (b)).

다섯째,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2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 ii) 추가 제출 서류에서의 주장

첫째, 표장 “lgstudio”는 오랜 기간 일반적으로 사용된 표장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스튜디오 관련 커뮤니티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출한 바 없고, 특히, 피신청인은 세도([www.sedo.com](http://www.sedo.com))라는 도메인 매매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셋째,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에 연락하여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것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세도([www.sedo.com](http://www.sedo.com))라는 도메인 매매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 하고 있고, 그 판매 가격으로 EUR 10,000(한화 약 1,383만원)라는 거액을 제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판매금액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 목적으로 등록 받았다는 점은 명백한 것이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i) 답변서에서의 주장

첫째, “LG STUDIO” 는 이미 신청인이 주장하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아니다. 상표권등록 이전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이름일 뿐이다.

둘째, 2006년 5월 25일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http://www.lgstudio.biz> 경우도 스튜디오 사이트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진 일반적인 단어조합의 도메인일 뿐이다.

셋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없도록 방해한 적이 없으며, 도메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권리를 박탈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다.

넷째, 아직 사이트 운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 혼동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스튜디오관련 커뮤니티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다.

다섯째, 신청인은 “LG그룹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상표 · 서비스표인 “LG” 를 포함하고 있어 LG그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도메인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4년 8월 25 글로벌도메인(.com, .net, .org) 등록 수 135,142,519 개(별첨 전세계도메인등록현황.jpg)중 lg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 중 일부를 첨부한다(별첨 lg-단어 들어간 도메인.jpg).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lg단어가 들어간 모든 도메인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신청인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여섯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강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취지로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lg 측에 연락을 해 구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일곱째, 피신청인은 2013년 7월 1일 개인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였고, 도메인 갱신 비용을 정당히 지불하고 있다.

여덟째,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ii) 추가 제출 서류에서의 주장

첫째, “lgstudio” 및 “엘지스튜디오” 표장이나 상호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검색엔진 네이버에서 "엘지스튜디오"를 지도 검색하여 확인해 보면

“LG포토” “엘지스튜디오”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다. (피신청인의 증거 제5호증.PDF 출력물). 전세계적으로는 “lgstudio.net” 과 함께 더 많은 수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lg”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 또는 “lgstudio” 라는 표장이 신청인 회사에 모두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둘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시점에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상표등록을 해본 적도 없으며 등록상표 확인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피신청인이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의 도메인을 등록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의 추측일 뿐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Google에서 “lgstudio”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여 보면, 거의 모든 자료가 신청인의 주방 · 가전기기(home appliance)와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신청인이 주장하는데 이는 모순된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을 등록한 시점은 2013년 7월 1일 이고 신청인이 구글 <http://www.google.com> 검색한 시점은 2014년 9월 25일이므로 신청인의 상표가 2013년도에 그리 유명하거나 저명한 이름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본격적으로 매스컴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피신청인의 증거자료 제6호증.PDF출력물). 네이버 인터넷 뉴스검색에서 “lgstudio” 를 검색해보면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된 시점은 2014년 1월~2월 임을 알

수 있다(피신청인의 증거자료 제5호증.PDF 출력물).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시점인 2013년 7월 1일 무렵에는 신청인 회사에서 “lgstudio”와 “엘지스튜디오”로 미국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도 없고, 피신청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셋째, 피신청인은 몇 달 전 “lgstudio.com” 도메인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첫 번째 전화 통화 시 개인사이트 운영 목적이라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2주정도 지난 후 신청인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200만원을 제시하여 팔지 않겠다고 하니 400만원을 다시 제시하고 이틀 뒤 신청인이 증거(신청인 증거 제16호증)로 제시한 문자를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생업에 바빠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1500만원을 제시한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이는 분명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뿐이다.

넷째, 위와 같은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할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 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 1은 표장 “LG STUDIO”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이전에 상표를 등록한 상표등록권자임을 알 수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의 구성 중 “.com”과 같은 식별력이 없는 gTLD를 제외하고 보면 신청인 1의 표장과 그 문자 구성이 동일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참조: Diesel v. LMN*, FA 804924 (Nat. Arb. Forum Nov. 7, 2006) (단지 상표 사이의 공간을 없애거나 “.com”과 같은 gTLD를 부가하는 것은 규정 제4조 (a)항 (i)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상표 VIN DIESEL과 구별하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규정 제4조 (a)항의 첫 번째 요건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표의 식별력은 당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lgstudio” 라는 문자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기 세탁기, 전기 냉장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이들의 보통명칭이거나 그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규정 제4조(a)항(ii)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소극적 사실은 신청인이 완전히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증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면 충분하고(a *prima facie* case), 신청인이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는 것이다. 참조:Hanna-Barbera Productions, Inc. v. Entertainment Commentaries, NAF Claim No. FA741828(규정 제4조 (a)항 (ii)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전환되기 전에 신청인은 먼저 도메인 이름에 관해서 피신청인이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a *prima facie* case-를 해야 한다.); AOL LLC v. Gerberg, NAF Claim No. FA 780200(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a *prima facie* case-를 해야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가벼운 것이다. 신청인이 그런 정도의 입증을 충족하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 1 및 2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며, 이견 등록상표의 권리자 및 사용권자인 신청인 1 및 2는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자신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고 제3자의 lgstudio.biz 도메인이름도 2006년 등록한 이래 스튜디오 싸이트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2013년 7월1일 개인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여 그 운영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므로 분쟁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쟁도메인 이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임을 알 수 없고 제3자가 lgstudio.biz 사이트를 스튜디오 싸이트로 운영하고 있다거나 우리나라 지도 검색에서 “LG포토” “LG스튜디오” 등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제3자의 상호가 2건 정도 검색되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을 개인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등록하여 갱신을 하며 유지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규정 제 4조 (a)항 (ii)의 요건 사실을 성립하였다. 참조:De Agostini SpA v. Marco Cialone, WIPO Case No. DTV2002-0005;Accor v. Eren Atesmen, WIPO Case No. D2009-0701).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신청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점, 신청인의 표장 “LG”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페이지에는 “LG Studio Series”, “Lg Appliances”, “lgstudio.com”와 같은 표장이나 링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에 연락하여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은 것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세도([www.sedo.com](http://www.sedo.com))라는 도메인 매매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 하고 있고, 그 판매 가격으로 EUR 10,000(한화 약 1,383만원)라는 거액을 제시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판매금액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 목적으로 등록 받았다는 점은 명백하며,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UDRP 4.(a)(iii), (b))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없도록 방해한 적이 없으며, 도메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권리를 박탈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이고,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lg단어가 들어간 모든 도메인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신청인의 억지 주장일 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강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취지로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lg 측에 연락을 해 구매를 강요한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출시나 홍보가 2014년 1~2월 경에나 개시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할 당시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에 관하여 먼저 신청인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매가격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 것은 반드시 그 가격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판매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전달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또한 주장하고 있다.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이라는 주관적인 의사에 관한 사실은 신청인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일, 신청인 관련 상표의 주지도,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 실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이 속해 있는 LG그룹의 계열사인 "LG 전자"의 브랜드가치는 59억5500만달러(한화 약 6조5천억)에 이르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 3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한민국의 특허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LG그룹의 표장 “LG”의 저명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분쟁도메인이름의 구성 중 “LG” 부분은 신청인 회사의 그룹 상호의 약칭 또는 표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높고 특히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요 영업 거점을 두고 있어 국내 거주자인 피신청인은 적어도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LG” 부분이 신청인의 널리 알려진 상호의 약칭 또는 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비록 신청인의 상표 “LG STUDIO” 제품의 본격 출시나 홍보 개시 시점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이후인 2014년 초라고 할지라도 신청인의 상표의 국내 등록일은 2011.6.27.임은 그 상표등록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적어도 “LG” 부분이 신청인의 지명도가 높은 상호의 약칭이나 표장임을 알 수 있었을 피신청인으로서 “LG”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의 경우 신청인의 상표와의 저촉 가능성을 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바로 이점에서 피신청인은 간단한 상표 검색만으로도 “LG STUDIO”가 신청인의 등록 상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신청인이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일보다 훨씬 앞서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모르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의 링크 항목 중에는 신청인의 제품을 시사하는 “LG Appliances”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아울러 판단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신청인은 등록한지 1년이 지나도록 분쟁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도([www.sedo.com](http://www.sedo.com))라는 도메인 매매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 하고 있고, 그 판매 가격으로 EUR 10,000(한화 약 1,383만원)라는 거액을 제시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판매금액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메인이름의 일반적인 판매의 광고나 제안이 모두 부당한 목적의 도메인 거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분쟁도메인이름의 한 요부가 신청인의 지명도가 높은 상호의 약칭 내지 표장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통상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유지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EUR 10,000(한화 약 1,383만원)라는 거액의 판매 희망가를 도메인 매매 업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신청인과의 실제 협상 과정에서 1,500만원을 제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인터넷 사용자는 지명도가 높은 신청인의 상호가 포함된 분쟁도메인 이름을 보고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것으로 오인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바, 이런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도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eBay Inc. v. SGR Enterprises and Joyce Ayers, WIPO Case No. D2001 0259(도메인 이름<ebaylive.com> 및 <ebaystores.com>은 상표 EBAY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해 그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를 본 인터넷 사용자는 분쟁도메인이름이 eBay와 관련한 회사이며, 후원을 받는 것이라고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SGR Enterprises and Joyce Ayers”가 EBAY라는 명칭을 왜 분쟁도메인이름의 구성 요소로 채용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eBay의 신용에 편승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lgstudio.com>을 신청인2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남호현

단독 패널

결정일: 2014년 10월 13일